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6호 2015. 12. 15. (화요일)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99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00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101호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102호 「하동군 대한민국의약품협회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103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104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105호 「하동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106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107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108호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하동군 조례 제2109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110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9
- 하동군 조례 제2111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하동군 조례 제2112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하동군 조례 제2113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49
- 하동군 조례 제2114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하동군 조례 제2115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하동군 조례 제2116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59
- 하동군 조례 제2117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68
- 하동군 조례 제2118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하동군 조례 제2119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78
- 하동군 조례 제2120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80
- 하동군 조례 제2121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하동군 조례 제2122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 하동군 조례 제2123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 하동군 조례 제212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 하동군 조례 제2125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 하동군 조례 제2126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 하동군 조례 제2127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8호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176
- 하동군 규칙 제1139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9
- 하동군 규칙 제1139호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2

회									
람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6호 2015. 12. 15. (화요일)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99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00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101호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102호	「하동군 대한민국의약품협회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103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104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105호	「하동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106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107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108호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하동군 조례 제2109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110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9
○ 하동군 조례 제2111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하동군 조례 제2112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하동군 조례 제2113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49
○ 하동군 조례 제2114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하동군 조례 제2115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하동군 조례 제2116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59
○ 하동군 조례 제2117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68
○ 하동군 조례 제2118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 하동군 조례 제2119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78
○ 하동군 조례 제2120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80
○ 하동군 조례 제2121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하동군 조례 제2122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 하동군 조례 제2123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 하동군 조례 제212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 하동군 조례 제2125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 하동군 조례 제2126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 하동군 조례 제2127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8호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176
○ 하동군 규칙 제1139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9
○ 하동군 규칙 제1139호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2

회									
람									

(2) 제 446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99호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② 별지 제1호서식 “<u>주민등록번호</u>”</p> <p>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 은 제13조제3항의 <u>심의결과에 의거</u>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③ 별지 제2호서식 “<u>주민등록번호</u>”</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② 별지 제1호서식 “<u>생년월일</u>”</p> <p>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u>심을</u> 거쳐 - - - - - -----.</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③ 별지 제2호서식 “<u>생년월일</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0호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제5호 중 “ 「지방공기업법」 제77
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이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p> <p>-----</p> <p>-----</p> <p>--</p> <p>-----</p> <p>--</p> <p>-----</p> <p>--</p> <p>-----</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1호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의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의정 모니터활동 등 의정홍보사업
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4. 의정동우회 지역봉사사업
5. 하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및 군정 현황사항 캠페인 활동
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2호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이하 “하동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2. 군정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5. 그 밖에 하동군 군정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 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은 읍면 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상호 협력하는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하동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제 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하동발전협의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① 하동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발전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 446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3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4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공직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2항”을 “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공직윤리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u>공직자윤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직자윤리법</u> 」 제9조 ----- ----- <u>공직자윤리위원회</u> 의 ----- -----.
제2조(구성) ① <u>위원회</u>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u>공직자윤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 -----.
1. <u>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u>	1. <u>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u>위원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8조제12항</u> 후단에 따른 승인	2. 「 <u>공직자윤리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의 관할대상</u> 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5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을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 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를 “의안의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u>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군수가 발의하는 의안</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생략)</p> <p>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u>행정안전부</u>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p> <p>⑦ (생략)</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행정자치부</u>-----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u>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u>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1. (생략)</p> <p>2. <u>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u></p> <p>3. <u>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u></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u>의안의 소관부서</u>----- ----- ----- -----.</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u>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6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내용과의 대비로써”를 “내용과 비교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1. 2. (생략)</p> <p>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u></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u></p> <p>③ <u>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1. <u>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u></p> <p>2. <u>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u></p>	<p>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u>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내용과 비교하여</u>-----.</p> <p><삭제></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7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46 호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농·수·임산물,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 공연, 행사, 대회
2.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4.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6.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8.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8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비수기 평일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하 동 군 공 보

(22) 제 446 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 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 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 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 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별표 3】

사 용 자 수 칙 (제12조제1항 관련)

사 용 자 수 칙

이곳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동물은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지피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흥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p> <p>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p> <p>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p> <p>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p> <p>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p> <p>2.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면제할 수 있는 경우</p> <p>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p> <p>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p> <p>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라.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p> <p>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p>
<p>별표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p> <p>< 별지작성 ></p>	<p>별표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p> <p>< 별지작성 ></p>
<p>별표3 사용자 수칙</p> <p>10. 유실 또는 피해</p> <p>○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p>	<p>별표3 사용자 수칙</p> <p>10. 유실 또는 피해</p> <p>○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p> <p>○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p>

【별표 2】 현행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하 동 군 공 보

(26) 제 446 호

【별표 2】 개정안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손해배상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3) 비수기 주중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 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09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수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2. 읍·면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 지역대

제2장 편성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② 대원(대장과 부대장을 포함한 전 대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대장 임기)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30) 제 446 호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역할과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지역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1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복·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

제17조(실비 지급 등)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게 지원하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복·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 절차는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부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	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 2]

주부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3항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기동대의 규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별표 3]

식비·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지급액	일반실 운임 정액	2등급 운임 정액	2등 운임 정액	정액	30,000	20,000

하 동 군 공 보

(36) 제 446 호

[별지 제1호서식]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 원 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세 대 주 와 의 관 계	의
	직 업		학 력	
보유기술 및 기 능	종 목			
	취 득 일			
<p>위와 같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서명 또는 인)</p>				
구비서류 제 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p>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하동군수 (인)</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0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446 호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 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노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1호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
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
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제4항 중 “유지보수비를”을 “공동부담금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4)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u>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u></p>	<p>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은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 제 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u></p>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p>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 ----- ----- -----<u>사</u> <u>업시행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현행과 같음)
<p>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22조(양도의 대여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p> <p>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u>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22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p> <p>② < 삭 제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계 정 안
<p>제23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p>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p> <p>③ 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 공 동부담금은 ----- -----.</p>

하 동 군 공 보

(46) 제 446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2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				
위탁시설				
수탁운영 기 간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 화		
<p>위와 같이 복지관 ()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코자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하 동 군 수 귀 하</p> <p>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서</p>				

하 동 군 공 보

(48)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탁 운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u>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u></p>		<p>제10조(위탁 운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u>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u></p>	
<p>【별지 제1호서식】</p> <p>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p>		<p>【별지 제1호서식】</p> <p>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p>	
신 청 자	단체(법인) 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3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446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4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를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52) 제 446 호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을 “뜻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시설”이라 함은”을 ““공공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계약하고자”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로 한다.

별표와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구분	1 순위	2 순위	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기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다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할 때에는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한부모가족·노인(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p>	<p>제명 “<u>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노인복지법」 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따라-----허가 또는 위탁-----장애인 등이 ----- -----.</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p>

하 동 군 공 보

(56)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u>"공공시설"이라 함은</u> 군·군의 회·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u>계약하고자</u>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p>	<p>2. <u>"공공시설"이란</u> ----- ----- ----- -----.</p> <p>제3조(적용범위) ----- ----- -----<u>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u> ----- -----. ----- -----.</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5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u></p> <p>③ <u>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u></p>	<p>제5조(위탁운영) ① -----위하여 <u>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u> -----.</p> <p>③ <u>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④ 생략</p> <p>⑤ <u>수탁자는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u></p> <p>⑥ 생략</p>	<p>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받아야 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6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하동군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동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60) 제 446 호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장애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사업) 및 위탁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및 고용승계
6. 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위탁기관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학교,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 감사) 위탁기관은 위탁운영 상황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별지의 서식으로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62) 제 446 호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기준점수에 준하여 위탁취소, 공개모집,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 여부 등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준점수, 범례 >

기준점수	위탁여부
0점 ~ 69점	위탁취소
70점 ~ 80점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81점 ~ 100점	재위탁(계약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 수탁자는 재심의를 참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우수하게(평가결과 81점 이상) 운영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협약 등을 위반하여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4. 위탁기관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7조제2항 관련)

구 성	내 용
1. 수탁신청 기관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법인 유형, 조직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공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제7조제3항 관련)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별표 3】

재위탁 평가 기준 및 배점(제14조 관련)

평가영역	평 가 문 항	배 점
조직 및 관리	1)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5
	2) 운영위 / 자문위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규정의 시행 여부	5
	3)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	3
	4)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	3
인력 및 재정관리	1)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3
	2) 시설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3
	3) 법인과 시설의 채용조달 능력	5
	4) 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5
	5) 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5
프로그램	1)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	5
	2)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	10
	3) 만족도 정도	5
	4) 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5
지역사회 관계	1)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5
	2) 지역사회 조직 활동	3
	3) 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	5
	4) 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	5
위탁 (재위탁) 조건이행	1) 위탁(재위탁) 조건 이행 정도	5
	2)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5
	3) 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5
	4) 고용승계	5

※ 매우 우수 (높은 점수)

평가영역	평 가 문 항	배 점
조직 및 관리	1)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5
	2) 운영위 / 자문위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규정의 시행 여부	5
	3)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	3
	4)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	3
인력 및 재정관리	1)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3
	2) 시설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3
	3) 법인과 시설의 채용조달 능력	5
	4) 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5
	5) 민간채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5
프로그램	1)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	5
	2)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	10
	3) 만족도 정도	5
	4) 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5
지역사회 관계	1)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5
	2) 지역사회 조직 활동	3
	3) 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	5
	4) 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	5
위탁 (재위탁) 조건이행	1) 위탁(재위탁) 조건 이행 정도	5
	2)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5
	3) 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5
	4) 고용승계	5

※ 매우 우수 (높은 점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7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체육
2. 교육·문화
3. 직업·경제
4. 사회참여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70) 제 446 호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하동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72) 제 446 호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
4. 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
5. 기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기타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17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 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18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
-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3.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참여 도우미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제6장 장애인 가족지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장애인가족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
-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하 동 군 공 보

(74) 제 446 호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장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제12조 관련)

시설유형	시설명
장애인 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하동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동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동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하동군 수화통역센터

【별표 2】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보조사업(제22조 관련)

지원사업 유형	사 업 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랑나눔미 빨래방운영 ·사랑나눔미 빨래방 기기구입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보장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이동목욕차량 운영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8호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19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하동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하동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게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0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활동 등 군정홍보사업
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4.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사업
5. 하동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활동
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1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에”를 “등에”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증명 등”을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를 “공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구”를 “신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증 명)			
1. <삭제 2003. 5.19 조1649>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재직(경력·퇴직) 증명	1통	5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	
(5) 공부의 등·초본교부			
○ 대장문서	1통	300	지적관계 제외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6) 공부열람			
○ <삭제>			
○ 외국인 등록표 열람	1매	100	
○ 환지예정지 열람	1매	100	
○ 체비지(매각) 사실 열람	매당	100	
(7)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500	
(2)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500	
(4)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하 동 군 공 보

(84)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삭제>			
(3)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 증명	1통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 증명	1통	5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500	
(3) <삭제 2003. 1. 9 조1642>			
6. <삭제 2004. 2. 26 조1678>			
(1) <삭제 2004. 2. 26 조1678>			
(2) <삭제 2004. 2. 26 조1678>			
7. <삭제 2004. 2. 26 조1678>			
(1) <삭제 2004. 2. 26 조1678>			
(2) <삭제 2004. 2. 26 조1678>			
(3) <삭제 2004. 2. 26 조1678>			
(4) <삭제 2004. 2. 26 조1678>			
(5) <삭제 2004. 2. 26 조1678>			
(6) <삭제 2004. 2. 26 조1678>			
(7) <삭제 2004. 2. 26 조1678>			
(8) <삭제 2004. 2. 26 조1678>			

하 동 군 공 보

(85)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8.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삭제 2006.3.8 조1744>			
(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500	
(2) 공유재산의 대부	1통	5,000	
(3)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1통	3,000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	
2. 건설관계			
(1) <삭제>			
(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	
(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7)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8)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기간 연장 신청	1건	1,000	
(9)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	1건	1,000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12) 하천(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13) 하천(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1건	500	
(14)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15)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3)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	1건	100,000	

하 동 군 공 보

(86)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4)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40,000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	
(6) <삭제 2003. 1. 9 조1642>			
(7) <삭제 2003. 1. 9 조1642>			
(8) <삭제 2003. 1. 9 조1642>			
(9) <삭제 2003. 1. 9 조1642>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	
(1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13)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	
(14) <삭제 2003. 1. 9 조1642>			
(15) <삭제 2003. 1. 9 조1642>			
(16) <삭제 2003. 1. 9 조1642>			
(17)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신고	1건	70,000	
(18)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신고	1건	35,000	
(19) <삭제 2003. 1. 9 조1642>			
(20) <삭제 2003. 1. 9 조1642>			
(21) <삭제 2003. 1. 9 조1642>			
(22) <삭제 2003. 1. 9 조1642>			
(23) <삭제 2003. 1. 9 조1642>			
(24) <삭제 2003. 1. 9 조1642>			
(25) <삭제 2003. 1. 9 조1642>			
(26) <삭제 2003. 1. 9 조1642>			
(27) <삭제 2003. 1. 9 조1642>			
(28) <삭제 2003. 1. 9 조1642>			
(29) <삭제 2003. 1. 9 조1642>			
(30) <삭제 2003. 1. 9 조1642>			

하 동 군 공 보

(87)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31) <삭제 2003. 1. 9 조1642>			
(32) <삭제 2003. 1. 9 조1642>			
(33) <삭제 2003. 1. 9 조1642>			
(34) <삭제 2003. 1. 9 조1642>			
(35)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영업신고	1건	40,000	
(3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영업신고	1건	20,000	
(37) <삭제 2003. 1. 9 조1642>			
(38) <삭제 2003. 1. 9 조1642>			
(39) <삭제 2003. 1. 9 조1642>			
(40) <삭제 2003. 1. 9 조1642>			
(41) <삭제 2003. 1. 9 조1642>			
(42) <삭제 2003. 1. 9 조1642>			
(43) <삭제 2003. 1. 9 조1642>			
(44) <삭제 2003. 1. 9 조1642>			
(45) <삭제 2003. 1. 9 조1642>			
(46) <삭제 2003. 1. 9 조1642>			
(47) <삭제 2003. 1. 9 조1642>			
(48) <삭제 2003. 1. 9 조1642>			
(49) <삭제 2003. 1. 9 조1642>			
(50) <삭제 2003. 1. 9 조1642>			
(51) <삭제 2003. 1. 9 조1642>			
(52) <삭제 2003. 1. 9 조1642>			
(53) 안경업소 개설(양도·양수)등록신청	1건	10,000	
(54)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주)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건	10,000	
(55)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1건	40,000	
(56)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1통	20,000	
(57)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주유소)	1통	20,000	

하 동 군 공 보

(88)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58)	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	1통	10,000	
(59)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판매소)	1통	10,000	
(60)	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1통	10,000	
(6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영업용화물차등록)	1통	5,000	
(6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6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64)	치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 한정)	1건	10,000	
(6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신고 한정)	1건	10,000	
(6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67)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개설장소 이전)	1건	40,000	
(68)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	
(69)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7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4.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1건	10,000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2002. 9.24 조1627>			
(12)	<삭제 2002. 9.24 조1627>			
(13)	<삭제 2002. 9.24 조1627>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복합 유통·제공업의 등록(신고)	1건	20,000	
(15)	<삭제>			
(16)	<삭제>			

하 동 군 공 보

(89)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1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5. 상수도 관계				다만, 정액제에 수공설 없는 사의 계수 수료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 시험수수료	1건당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1건당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갱신1건당	4,000 2,000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5)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40mm미만 40mm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6. 회계관계				
(1)	<삭제 2006.3.8 조1744>			
7.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신청			
○	법인	1건당	30,000	
○	공인중개사	1건당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신청	1건당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인)	1건당	15,000	

하 동 군 공 보

(90) 제 446 호

구 분	기 준	금액(원)	비 고
8. 농수산물관계			
(1)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	
(3)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	1건	4,500	
(4)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5) 어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3,500	
(6) 어업권보상등의 청구	1건	2,000	
(7)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000	
(8) 어업권원부열람,등초본 교부신청	1건	800	
(9)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1,500	
(10) 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	1건	1,000	
(11)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1건	1,000	
(12) 어업재개신고	1건	1,000	
(13) 수산동식물의포획·채포금지해제 허가신청	1건	3,000	
(14)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	
(15)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 (어선사용승인)증재교부신청	1건	1,000	
(16) 어업권의보상등의청구	1건	600	
(17) 입어재결신청	1건	1,600	
(18) 어장구역등재결 신청	1건	1,600	
(19) 어업휴업신고	1건	1,000	
(20)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3,500	
(21)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1건	4,000	
(2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23) 유해어법의사용 허가신청	1건	2,500	
(24)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장지정신청	1건	2,500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600	
(2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27)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건	1,600	
(28)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	

하 동 군 공 보

(91) 제 446 호

구 분	기준	금액(원)	비고
(29)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1건	3,000	
(30)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000	
(31) 어업신고	1건	1,600	
(32) 내수면어업 면허	1건	5,000	
(33)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1건	5,000	
(34) 내수면어업 허가	1건	4,000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36)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2,000	
(37)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38) 어선등록	1건	3,000	
(39) 변경등록	1건	3,000	
(40)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1,500	
(41) 어선개조(건조발주) 허가	1건	1,000	
(42)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43)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44) 선적증서 재교부	1건	1,000	
(45)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3,000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1,600	
(48)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5,000	
(49) 육상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5,000	
(50) 육상 변경허가	1건	1,600	
(5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53)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54)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55)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5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9.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 <u>인허가</u> , ----- -- <u>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에</u> - - <u>징수에 관하여</u> ----- -----	제1조(목적) ----- --- <u>인가·허가</u> , ----- -- <u>등에</u> ----- --- <u>징수에</u> ----- -----
제2조(적용) ----- --- <u>증명 등</u> ----- -----	제2조(적용) ----- --- <u>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u> <u>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u> <u>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u> ----- -----
제4조(기준) ① (생략) ② ----- <u>공무</u> ----- ----- ③ ----- ----- <u>요구</u> ----- -----	제4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부</u> ----- ----- ③ ----- ----- <u>신청</u> -----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u> <u>종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징</u> <u>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u> <u>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u>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u> <u>생활보장</u> ----- ----- 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2 (생략) <u><신설></u> 3.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u> <u>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u>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u> <u>종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징</u> <u>수하지 아니한다.</u> 1. ----- <u>제2조제2호에 따른</u>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u> <u>한 때</u> 4.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u> <u>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u>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현행)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증 명)				(증 명)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5) (생략) (6) 공부열람 ○ 제적부 열람 (7) 생략	매당	4원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5) (현행과 같음) (6) 공부열람 < 생략 > (7) (현행과 같음)			
(인 가 하 가 신 고 신 청 등 특 자 정 확 인 금)				(인 가 하 가 신 고 신 청 등 특 자 정 확 인 금)			
2 건설관계 (1) 시도 개설 허가 (2)~(6) (생략) (7) <u>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 점용 시용 허가</u> (8) <u>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 점용 시용 기간 연장</u> (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건	70원		2 건설관계 < 생략 > (2)~(6) (현행과 같음) (7) <u>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 점용 시용 허가</u> 1건 1000원 (8) <u>소하천 공사 시행소하천 점용 시용 기간 연장</u> 1건 1000원 (9) (현행과 같음) (10) <u>소하천 왕성회복 의무 면제 신청</u> 1건 1000원 (11) <u>소하천 점용 시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u> 1건 1000원 (12) <u>하천(공유수면) 점용 시용 허가</u> 1건 1000원 (13) <u>하천(공유수면) 점용 변경 허가</u> 1건 500원 (14) <u>하천(공유수면) 허가항 변경 신고</u> 1건 500원 (15) <u>폐천부지 교환 신청</u> 1건 1000원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u>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u> 1건 2000원 (2) <u>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u> 1건 3000원 (3)~(5) (생략) (5) <u>안정소 개설(노양양) 등록 신청</u> 1건 2000원 (5) <u>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u> 1건 2000원 (5) <u>의료기관의 개설 허가항 변경 신고</u> 1건 4000원	1건	2000원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u>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개업장소 이전)</u> 1건 2000원 (2) <u>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u> 1건 10000원 (3)~(5) (현행과 같음) (5) <u>안정소 개설(노양양) 등록 신청</u> 1건 10000원 (5) <u>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u> 1건 10000원 (5) <u>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개업장 소 이전)</u> 1건 40000원			

하 동 군 공 보

(96) 제 446 호

현 행				개 정 안			
(50~61) (생략) (6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건	5000원		(50~61) (현행과 같음) (6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64) 차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영토·양주신고 한정) (65) 인양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영토·양주신고 한정) (6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67)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신청(개설장소 이전) (68) 부대사업 개설신고 (69)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신 설>				(7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신 설>				4 문화공보관계			
<신 설>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2000원	
<신 설>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신 설>				(3)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신 설>				(4) 공연장 증축허가	1건	5000원	
<신 설>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원	
<신 설>				(6) 공연장 관람료 신고	1건	500원	
<신 설>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신 설>				(8)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5000원	
4 문화공보관계				7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2000원		(1~2) (생략)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1)	1건	20000원	
(3)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4) 공연장 증축허가	1건	5000원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원					
(6) 공연장 관람료 신고	1건	500원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8)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5000원					
7 부동산 중개업 관계				8 농수산관계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1)	1건	20000원		(3) 아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4) (생략)			
				(5) 아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4000원	
				(6) 아업권의 보상등의 청구	1건	600원	
				(7~19) (생략)			
				(20)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4000원	
				(21~34) (생략)			

하 동 군 공 보

(97) 제 446 호

현 행				개 정 안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600원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원	
(36)(51) (생략)				(36)(51) (현행과 같음)			
<신 설>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신 설>				(53)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신 설>				(54) 허가 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신 설>				(55)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신 설>				(5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신 설>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하 동 군 공 보

(98) 제 446 호

[별표 2]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매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 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1시간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1,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250원 · 1장 초과마다50원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녹화 테이프(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 화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5,000원 ※매처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 ·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 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 ※ 매처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5,000원 ※매처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3,000원 ※매처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처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2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생 략)</p> <p><신 설></p>	<p>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3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로 하고”를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사태·사망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제3조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망”을 “산사태·사망”으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를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망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로 하고</u>,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u></p> <p>1. <u>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4.9.2.조2045></u></p> <p>2. <u>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u>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u>으로 한다.</u></p> <p>제8조(위원의 의무) ① <u>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u> -----.</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u>으로 한다.</u></p> <p>1. <u>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u></p> <p>2. <u>산사태·사방</u> ----- ----- <u>관련</u> <u>기관·단체의 임직원</u></p> <p><삭제></p>

하 동 군 공 보

(104) 제 446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0조(간사) <u>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자가 된다.</u></p> <p><u>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u></p> <p>1. ~ 4. (생 략)</p>	<p>제10조(간사) <u>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u></p> <p><u>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경남도지사”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공보, 지역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

제3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06) 제 446 호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중 “생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으로, “제32조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에 한함)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2016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하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것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50조 전단 중 “영 제134조제4항”을 “영 제134조제1항”으로,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5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하 동 군 공 보

(120) 제 446 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산·수산업용에 한함)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미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동 군 공 보

(122) 제 446 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 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희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하 동 군 공 보

(130) 제 446 호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3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하 동 군 공 보

(132) 제 446 호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근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근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28조제23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u> <u>② <신설></u></p>	<p>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 <u>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u> ----- ----- <u>제32조제1항</u> ----- ----- ② 영 제8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u>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함)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u>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u>농산물 건조·보관시설</u></p>
<p><u><신설></u></p>	<p>제3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u>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2016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완화한다.</u> 1. <u>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u> 2. <u>하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것</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p>	<p><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 관련)</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제2종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p> <p><별표2> 제2종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p> <p><별표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 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삭제)</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아. 별표 3 자목의 공장</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p>	<p><별표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 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하 동 군 공 보

(144)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아. 별표 3 자목의 공장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p>	<p><별표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 관련)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p> <p>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하 동 군 공 보

(146)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1>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별표11>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2>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별표12>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하 동 군 공 보

(148)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4>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별표14>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하 동 군 공 보

(150)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5>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별표15>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하 동 군 공 보

(152)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이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16>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 4 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 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하 동 군 공 보

(154)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7>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별표17>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18>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별표18>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제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사 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 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시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0>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별표20>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p> <p>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기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1>자연환경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 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 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 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별표21>자연환경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 협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 이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 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 (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 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p><별표22>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 시설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 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p>	<p><별표22>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설소만 해당 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 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소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2.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소유자시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p>

하 동 군 공 보

(164) 제 446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5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8조 관련)

성 명	회 원 번 호		
	생년월일(성별)		(남, 여)
현 주 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회 비	원	감면사유	
건강상태	양 호() 치료 중() 회복 중()	질 환 명	☆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는 필히 기재
회원구분	수영	일반회원()	일반회원()
		강습회원()	강습회원()
회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 회 원 이 용 안 내 ◇

1. 개장시간
 - 평일 : 06:00~22:00
 -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
2.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화요일
3. 수영장, 헬스장은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 합니다.(2회 이상 사용불가)
4.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하동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장 귀하

하 동 군 공 보

(166) 제 446 호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등 록 부(제8조 관련)

(단위 : 원)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등록일자	종료일자	회비수납액	비 고

※ 수영장, 헬스장 구분 작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7조(위탁관리) (생략)</p> <p><u><신설></u></p> <p>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별지 제4호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20%;">회원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able> <p>【별지 제6호서식】 회원등록부(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일련번호</th> <th style="width: 15%;">성명</th> <th style="width: 15%;">생년월일</th> <th style="width: 60%;">주소</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성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p>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_____, _____반환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p> <p>제18조(준용규정) _____「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_____.</p> <p>【별지 제4호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20%;">회원번호</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td> <td>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 여)</td> </tr> </table> <p>【별지 제6호서식】 회원등록부(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일련번호</th> <th style="width: 15%;">성명</th> <th style="width: 15%;">생년월일</th> <th style="width: 10%;">성별</th> <th style="width: 50%;">주소</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성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남, 여)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성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남, 여)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6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별지 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위탁관리) ①·②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19조(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27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2.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72) 제 446 호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자
2.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74)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u>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식품진흥기금</u> ----- ----- ----- .</p>
<p>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u>식품진흥기금</u>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 ----- ----- <u>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 .</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제3조(기금의 조성)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u></p>
<p>제4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u></p> <p>1.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u></p> <p>2. <u>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u></p> <p>3. <u>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u></p> <p>4. <u>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p>	<p>제4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그 밖에 식품위생 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항</p> <p>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u>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u></p> <p>1. <u>기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로 한다.</u></p> <p>2. <u>기금출납공무원은 안전위생담당 주사로 한다.</u></p> <p>② <u>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삭 제></p> <p>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u>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u></p> <p>1. <u>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u></p> <p>2. <u>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u></p> <p>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u>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u>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8호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행방 또는 재산조사” 를 “재산조사”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중 “지방세가 00억원 이상인”을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 -----.</p>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p> <p>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p> <p>5. ~ 11. (생략)</p>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p> <p>5. ~ 11. (현행과 같음)</p>
<p>제25조(세입마감) ① (생략)</p> <p>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u>다음연도 3월말일까지</u> 마감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5조(세입마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다음 해 2월 10일까지</u> -----.</p> <p>③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78)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채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납된 군세가 <u>10만원</u>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납2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89조(채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30만원</u> ----- ----- -----
제90조(채납자의 재산조사)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된 군세가 <u>10만원(가산금 및 채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u>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납자의 <u>행방 또는 재산조사</u> 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채납자의 재산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30만원</u> ----- ----- ----- <u>재산조사</u> -----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9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80) 제 4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부) <u>기금출납공무원</u>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제2조(장부) <u>기금출납원</u>-----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u>기금출납명령관</u>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의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나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u>기금운용관</u> ----- ----- ----- ----- -----.</p>
<p>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 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의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u>기금출납명령관</u>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u>기금출납공무원</u>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연금 영수증을 출여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③ <u>기금출납공무원</u>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기금 등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p>	<p>제5조(수납절차) ① ----- ----- ----- ----- <u>기금운용관</u>----- -----.</p> <p>② <u>기금출납원</u>----- ----- ----- ----- -----.</p> <p>③ <u>기금출납원</u>----- ----- ----- -----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기금의 사용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사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u> <u>2.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u> <u>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u> <u>4.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u> <u>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사업 등</u> 	<p><u>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p>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5년 12월 15일

하 동 군 의 회 의 장

하동군의회 규칙 제 93 호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청원의 철회)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건 서

청원건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원건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